

규제영향분석서

# 발명진흥법 시행령

<목 차>

1.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

특허청

< 규제의 개요 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규제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           | 소관부처   | 특허청                      | 작성<br>자    | 이름     | 서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<br>(과)  | 지역산업재산과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직급     | 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장   | 김태만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연락처    | 042-481-8622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장   | 박주연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이메일    | 9921292@korea.kr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관계법령<br>· 고시 등              | 발명진흥법 시행령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            | 유형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원수/규모     | 의견수렴방식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규제자   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| 3,415,863社 | 관보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해관계자  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| 3,415,863社 | 관보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부처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규제존속기한                      | 미설정<br>-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존속 필요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구분<br>(신설 또는 강화)            | 신설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신설(강화)<br>규제의 요지            | - ‘발명진흥법’ 일부개정법이 개정·공포(’16.1.27.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절차, 비용, 기준, 마크, 운영기관, 유효기간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10px;">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원하는 경우 신청<br/>(중소기업)</td> <td style="width: 10%; font-size: 2em;">▶</td> <td style="width: 40%; padding: 10px;">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<br/>(특허청)</td> </tr> </table>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원하는 경우 신청<br>(중소기업) | ▶ |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<br>(특허청) |
|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원하는 경우 신청<br>(중소기업) | ▶  |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<br>(특허청)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‘발명진흥법’ 일부개정법이 개정·공포('16.1.27.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절차, 비용, 기준, 마크, 운영기관, 유효기간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

<조문 대비표>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&lt;신 설&gt;</p>                   | <p>제9조의4(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신청)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인증신청서에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 |
| <p>제9조의4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제9조의10 (현행 제9조의4와 같음)</p> <p>제9조의5(인증기준)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식재산 경영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을 것</li> <li>2.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</li> </ol> <p>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|
| <p>제9조의5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제9조의11 (현행 제9조의5와 같음)</p> <p>제9조의6(인증의 유효기간) 법 제24조</p>   |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9조의6 (생 략)<br/> 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</p> <p>제9조의12 (현행 제9조의6와 같음)<br/> 제9조의7(인증서의 교부 등)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별표6호의2의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.</p>              |
| <p>제9조의7 (생 략)<br/> 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9조의13 (현행 제9조의7와 같음)<br/> 제9조의8(인증비용의 징수) ①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증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</li> <li>2.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</li> </ol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|
| <p>제9조의8 (생 략)<br/> 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9조의14 (현행 제9조의8와 같음)<br/> 제9조의9(인증업무 운영기관의 지정)</p>   |

| 현 행 | 개 정 안   |
|-----|---|
|     | <p>① 특허청장은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</li> <li>2.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</li> <li>3.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</li> </ol> <p>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p> |

# 1. 규제 의 필요성

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### □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

-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경영전략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고,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선점한 기업들의 분쟁제기도 증가 추세
  - \* 구글은 특허권을 높게 평가하여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(13.4조원)에 인수('12년), 이후 대부분의 특허권을 보유한 채 모토로라를 레노버에 29억 달러(3.1조)에 재판매('14년)
  - \*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제 특허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: ('08) 168건 → ('10) 180건 → ('12) 224건 → ('14) 300건 (지식재산보호협회, '15년)

### □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여부가 기업성과 직결

- 대기업들은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자사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경영 모델\*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
  - \* LG화학의 전사적 특허경영 시스템, IBM(美)의 기술분야별 PPM(Patent Portfolio Manager), 3M(美)의 지식재산 전문 자회사와의 IP Network 등
-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,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확보된 지재권을 활용하는 등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지속적 성장
  - \* '92년부터 꾸준한 '특허장벽 구축하기' 전략을 추진한 서울반도체는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을 모두 극복하고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('15년 매출 1조원 달성)

### □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은 미흡

- 지식재산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
  - \* '15년도 중소기업의 기업당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0.02건에 불과

## 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### □ 기존의 지원정책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널리 전파하기에 부족

-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지원사업\*을 실시하고 있으나, 한정된 규모의 예산·인력만으로 모든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부족

\* IP 스타기업 육성, IP-R&D 전략 지원, 지재권 교육·컨설팅,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등

-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의 구체적 수단·방법에 어려움을 호소하나 기존의 지원사업만으로는 지식재산 경영의 내재화가 어려움

### □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유인 설계 필요

- 특허청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재산 경영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\* 마련

\*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('11년), 발명진흥법 제24조의2('16년)

- 표준화된 지식재산 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「지식재산 경영인증」 도입 필요

\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(Inno-Biz)의 경우, '01년 제도 도입 후 선정 기업의 연구개발·매출액·영업이익 등에서 성과 도출 ('14년 이노비즈기업 실태조사)

### □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'인증' 필요성 증대

-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특허보증 요구 등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은 협력업체 관리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

\* 대기업은 구매 부품으로 인해 자사 제품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 및 제품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통상 특허보증을 요구

- 해외 수입업체의 특허·지식재산 매뉴얼 요구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

## 다. 규제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### □ (중소기업) 지식재산 경영 도입 및 경쟁력 강화

- 중소기업은 인증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의 구체적 방법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 추진 가능
- 지식재산 경영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
- 전략적 IP-R&D 등을 통해 핵심특허를 확보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
  - \*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직원 천명당 연평균 31건의 특허 출원(대기업 천명당 6건) (헤르만 지몬, “히든 챔피언”, '96년)

### □ (정부)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종합육성체계 구축

-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외에, 자발적·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### □ (경제) 산업활성화 및 고용창출

- 지식재산 경영 확산으로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
  - \* 중소기업의 특허권 10% 증가는 매출액 0.46%, 고용인원 0.26% 증가로 연결(노동연구원, '12년)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확대되어 지식재산 조사, 분석, 평가, 거래, 금융, 투자,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업 성장
  - \* 미국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규모는 약 4조3,300억원, 일본의 시장규모는 약 1조3,676억원, 한국의 시장규모는 약 3,377억원(지식재산서비스협회, '12년)



## 2. 대안의 발굴·검토

### 가. 고려된 대안

#### < 현행유지안 : 지식재산 경영인증 미실시 >

-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여부가 기업성과 직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
  -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관심이 저조

#### < 비규제대안 : 보조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유도,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보급 >

-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지재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,
  - 한정된 규모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경영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보급이 가능하나 매뉴얼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관심 부족

#### < 규제대안 1 :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 >

-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 가능

## 나. 대안의 분석

### 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모든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인증을 원하는 기업만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신청

### 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원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며, 인증여부 판단 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를 활용

### < 해외사례 분석 >

-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'12년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, 지식재산 경영인증이 운영되는 해외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

### < 타법사례 분석 >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에 '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'의 절차, 비용, 기준, 마크, 수행기관, 유효기간 등을 규정

####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

**제14조의2(품질인증의 신청)**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품질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의3(품질인증의 기준)**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·품질관리체제 등을 갖추고 있을 것
2. 제품의 품질 불량률이 1백만분의 1천 이하일 것

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제14조의4(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지정)**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2.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
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의5(품질인증서의 교부 등)** ①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별표 1의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.

**제14조의6(품질인증의 유효기간)**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**제14조의7(품질인증비용의 징수)** ①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장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
2.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 < 위임근거 검토 >

-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근거 존재

**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**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.

**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23조**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.

- '16.1.27.자 공포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 제24조의2제7항에 지식 재산 경영인증 절차, 비용, 기준, 마크, 운영기관,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명시

**발명진흥법 제24조의2 ⑦** 인증의 절차·비용, 인증기준, 인증마크,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, 인증의 유효기간,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 자문회의('13.3.15.)
  - (참석)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LG화학 등 대기업 지재권 담당자 6명, 법학교수 1명, 변리사 1명, 경영전문가 1명
  - (주요의견)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가 증대하고 있어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 필요
-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('14.4.3.)
  - (참석) 국무조정실, 산업부, 중기청 등 정부부처 대표 12명, 중기중앙회, 중진공 등 민관기관 대표 4명
  - (주요의견) 기업 지원을 위한 선의의 제도가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
- 중소기업 의견문의('14.4.29.)
  - (참석) 중소기업 임원급 대표 17명
  - (주요의견) 인증기업에 대한 매력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

### 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기존 규제 없음

## < 결론 >

- 지식재산 경영인증 획득 여부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음
- 또한 '16.1.27.자 공포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 제24조의2제7항에서 지식재산 경영인증 절차, 비용, 기준, 마크, 운영기관,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### 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#### 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| 가격기준연도                | 현재가치<br>기준연도 | 분석대상기간<br>(년) | 할인율(%)   | 단위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15                  | 2016         | 10            | 5.5      | 백만원,<br>현재가치 |
| 규제대안 1 :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영향집단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비용            | 편익       | 순비용          |
| 피규제 기업<br>· 소상공인      | 직접           | 451.35        | 231.28   | 220.07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간접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,286.25 | -2,286.25    |
|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<br>· 소상공인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<br>국민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정부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,128.65      |          | 1,128.65     |
| 총 합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,580         | 2,517.53 | -937.53      |
| 기업순비용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20.07        | 연간균등순비용  | 27.67        |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### <규제대안 1 :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 : 451.35백만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업무제목    | 인건비 및 인증비용   |
| 설명      |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인증비용   |
| 세분류     | 중소기업   |
| 활동제목    | 인건비  |
| 비용항목    | 행정부담   |
| 비용      | 42,306,000   |
| 활동비용 특성 | 반복적/비균등  |
| 산식      | 인건비용<br>[ 연간 투입인원(1) X 연간 투입시간(16) X 시간당 근로임금(원)(16025) X 피규제자 수(165) ]  |
| 근거설명    | <p>서류준비 및 심사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 1인 필요</p> <p>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이 서류준비 및 심사지원을 위해 할애하는 일수를 2일(일 근무시간 8시간)로 설정</p> <p>국가통계포털 - 중소기업 월급현황(2015년)을 바탕으로 시간당 근로임금 설정(지식재산 특성 상 중소기업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월급(2,563,966원)을 활용하였으며, 월 20일 근무 및 일 8시간 근무로 가정)</p> <p>신청기업 수는 인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*되는 산업재산권을 10.5건**(환산건 기준*** )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(7,353사)의 2.24%**** 정도인 165社(연간)로 가정</p> <p>* 평가지표 중 특허청이 보유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'지식재산권 보유 건수' 평가지표에서 70% 이상(전체 평가지표에서 70%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되는 점을 고려) 점수 획득이 가능한 중소기업</p> <p>** '지식재산권 보유 건수' 평가지표에서 15건 이상이 만점이므로 15건의 70%인 10.5건으로 가정</p> <p>*** '지식재산권 보유 건수' 평가지표에서 특허 1건을 1건, 실용신안과 상표 및 디자인을 0.8건으로 환산하여 계산</p> <p>**** '15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건수 162社 ÷ '15년 특허출원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 수 7,231社('15년도 특허출원 중소기업 19,232社 × '15년도 중소기업 직무</p> |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        | <p>발명 보상규정 보유율 37.6%, '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참조) ×100</p> <p>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여 10년간 총 4번의 신청이 가능함을 반영(1년차 인건비)</p>  |
| 세분류     | 중소기업   |
| 활동제목    | 인증비용   |
| 비용항목    | 행정부담   |
| 비용      | 99,000,000   |
| 활동비용 특성 | 반복적/비균등  |
| 산식      | <p>인건비 외 물적비용</p> <p>[ 가격(600000) X 연간 발생 횟수(1) X 피규제자 수(165) ]</p>  |
| 근거설명    | <p>인증 결정에 소요되는 심사인력(2인, 운영기관 외부 인력)의 인건비 및 출장경비를 60만원으로 산정('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'의 비용이 심사인력 2인의 인건비(25만원/인)와 출장경비로 구성됨을 참고)</p> <p>연간 발생 횟수를 1회로 가정</p> <p>신청기업 수는 인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*되는 산업재산을 10.5건**(환산건 기준*** )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(7,353社)의 2.24%**** 정도인 165社(연간)로 가정</p> <p>* 평가지표 중 특허청이 보유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'지식재산권 보유 건수' 평가지표에서 70% 이상(전체 평가지표에서 70%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되는 점을 고려) 점수 획득이 가능한 중소기업</p> <p>** '지식재산권 보유 건수' 평가지표에서 15건 이상이 만점이므로 15건의 70%인 10.5건으로 가정</p> <p>*** '지식재산권 보유 건수' 평가지표에서 특허 1건을 1건, 실용신안과 상표 및 디자인을 0.8건으로 환산하여 계산</p> <p>**** '15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건수 162社 ÷ '15년 특허출원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 수 7,231社('15년도 특허출원 중소기업 19,232社 × '15년도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율 37.6%, '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참조) ×100</p> <p>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여 10년간 총 4번의 신청이 가능함을 반영(1년차 인증비용)</p> |
| 세분류     | 중소기업   |
| 활동제목    | 인건비  |
| 비용항목    | 행정부담   |
| 비용      | 36,028,368   |
| 활동비용    | 반복적/비균등  |

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특성         |   |
| 산식         | 인건비용<br>[ 연간 투입인원(1) X 연간 투입시간(16) X 시간당 근로임금(원)(16025) X 피규제자 수(165) ] |
| 근거설명       | 4년차 인건비<br>(내용은 1년차와 동일)  |
| 세분류        | 중소기업  |
| 활동제목       | 인증비용  |
| 비용항목       | 행정부담  |
| 비용         | 84,309,753  |
| 활동비용<br>특성 | 반복적/비균등   |
| 산식         | 인건비 외 물적비용<br>[ 가격(600000) X 연간 발생 횟수() X 피규제자 수(165) ]                 |
| 근거설명       | 4년차 인증비용<br>(내용은 1년차와 동일)   |
| 세분류        | 중소기업  |
| 활동제목       | 인건비   |
| 비용항목       | 행정부담  |
| 비용         | 30,682,250  |
| 활동비용<br>특성 | 반복적/비균등   |
| 산식         | 인건비용<br>[ 연간 투입인원(1) X 연간 투입시간(16) X 시간당 근로임금(원)(16025) X 피규제자 수(165) ] |
| 근거설명       | 7년차 인건비<br>(내용은 1년차와 동일)  |
| 세분류        | 중소기업  |
| 활동제목       | 인증비용  |
| 비용항목       | 행정부담  |
| 비용         | 71,799,337  |
| 활동비용<br>특성 | 반복적/비균등   |
| 산식         | 인건비 외 물적비용<br>[ 가격(600000) X 연간 발생 횟수(1) X 피규제자 수(165) ]                |
| 근거설명       | 7년차 인증비용<br>(내용은 1년차와 동일)가능함을 반영  |
| 세분류        | 중소기업  |
| 활동제목       | 인건비   |
| 비용항목       | 행정부담  |
| 비용         | 26,129,424  |
| 활동비용       | 반복적/비균등   |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특성         |   |
| 산식         | 인건비용<br>[ 연간 투입인원(1) X 연간 투입시간(16) X 시간당 근로임금(원)(16025) X 피규제자 수(165) ] |
| 근거설명       | 10년차 인건비<br>(내용은 1년차와 동일)   |
| 세분류        | 중소기업  |
| 활동제목       | 인증비용  |
| 비용항목       | 행정부담  |
| 비용         | 61,145,297  |
| 활동비용<br>특성 | 반복적/비균등   |
| 산식         | 인건비 외 물적비용<br>[ 가격(600000) X 연간 발생 횟수(1) X 피규제자 수(165) ]                |
| 근거설명       | 10년차 인증비용<br>(내용은 1년차와 동일)  |

□ 직접편익 :231.28백만

|        |   |
|--------|---|
| (정량)제목 | 특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(4-6년차) 20% 감면  |
| 금액     | 231,289,599   |
| 산식     | ( 47,600원*4.3건 + 7,000원*4.0건 ) * 125사 * 10년   |
| 근거설명   | <p>특허 4-6년차 연차등록료(청구항 9항 기준)가 매년 238,000원이고 디자인 4-6년차 연차등록료가 매년 35,000이므로, 20% 감면금액은 특허가 매년 47,600원이고 디자인이 매년 7,000원임</p> <p>인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(7,353사)의 평균 특허 보유건수는 15.4건이고 평균 디자인 보유건수는 14.2건이며, 중소기업 보유 특허 중 4-6년차 비율이 28.1%라는 점을 고려하면, 4-6년차 평균 특허 보유건수는 4.3건이고 4-6년차 평균 디자인 보유건수는 4.0건일 것으로 가정</p> <p>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 대비 인증 비율이 75.9%인 점을 고려하면,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165사가 신청하면 125사가 인증 받을 것으로 예상</p> |
| 근거설명   |   |
| 근거설명   |   |

|  |  |
|--|--|
|  |  |
|--|--|

간접편익 :2,286.25백만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정량)제목 |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 |
| 금액     | 2,286,256,134               |
| 산식     | 2,300,000원 * 125사 * 10년     |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근거설명 | <p>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특허와 같이 제품 또는 포장을 통해 홍보 가능하고 제3자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특허 1건으로 가정하고,</p> <p>특허 10% 증가는 매출액 0.46%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(노동연구원, '12년)과 인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특허 보유 건수는 15.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,</p> <p>인증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0.30% 증가할 것으로 예상</p> <p>또한 매출액 증가가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, 2014년도 중소제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781백만원(한국은행, '15년)이라는 점을 고려하면,</p> <p>인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.3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</p> |
|------|---|

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(정성)제목 | 해당사항 없음 |
| 분석     |        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근거설명 |  |
|------|--|

② 정부 :

비용 : 1,128.65백만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(정량)제목 | 행정인력   |
| 금액     | 897,377,4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식     | ( 0.5명 * 56,040,000 + 1.5명 * 56,551,000원 ) * 10년 |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(정량)제목 | 특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(4-6년차) 20% 감면에 따른 수수료 확보 손실 |
| 금액     | 231,289,5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|   |
|----|---|
| 산식 | ( 47,600원*4.3건 + 7,000원*4건 ) * 125사 * 10년 |
|----|---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근거설명 | <p>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에 필요한 연간 인력을 특허청 0.5명, 인증 업무 운영기관 1.5명으로 설정</p> <p>행자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금액(467만원)을 고려하여, 연간 인력 1인의 연봉을 5,604만원(467만원*12개월)으로 설정</p> <p>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의 2015년도 평균 연봉 56,551,000원을 인증 업무 운영기관 인력의 평균 연봉으로 설정</p> <p>특허 4-6년차 연차등록료(청구항 9항 기준)가 매년 238,000원이고 디자인 4-6년차 연차등록료가 매년 35,000원이므로, 20% 감면금액은 특허가 매년 47,600원이고 디자인이 매년 7,000원임</p> <p>인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(7,354사)의 평균 특허 보유건수는 15.4건이고 평균 디자인 보유건수는 14.2건이며, 중소기업 보유 특허 중 4-6년차 비율이 28.1%라는 점을 고려하면, 4-6년차 평균 특허 보유건수는 4.3건이고 4-6년차 평균 디자인 보유건수는 4.0건일 것으로 가정</p> <p>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 대비 인증 비율이 75.9%인 점을 고려하면,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165사가 신청하면 125사가 인증 받을 것으로 예상</p> |
|------|--|

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(정성)제목 | 해당사항 없음 |
| 분석     |        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근거설명 |  |
|------|--|

편익 : 백만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(정량)제목 |  |
| 금액     |  |
| 산식     |  |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       |  |
| 근거설명   |  |
| (정성)제목 |  |
| 분석     |  |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근거설명   |  |
| 정성적 분석 |  |

#### 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##### 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###### 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다수의 행정인력이 필요하지 않고,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므로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함

###### 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 주무부처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현황을 파악하여 인증 여부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

###### 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- 지식재산 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임
- 운영기관은 심사진행 및 기업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할 것이므로 충분히 집행 가능함

## 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### 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-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 확인 :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대상이므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임
- 피규제 대상 현황 : 3,415,863사(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, '13년 기준)
- 중소기업 의견청취 결과 :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인증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시책 필요
-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 : 인증 불획득으로 낭비될 수 있는 시간·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인증 신청을 받을 것이며,
  -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게는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조기에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

### < 경쟁영향평가 >

- 중소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므로 지식재산 경영 인증 획득에 제한이 없음
- 다만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,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충분한 자금·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스스로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증 부여가 무의미함

## 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-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경우 중소기업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, 비용(4.5억원) 대비 편익(25.2억원)이 크므로 선택 가능한

## 대안임

### 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#### □ (중소기업) 지식재산 경영 도입 및 경쟁력 강화

- 중소기업은 인증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의 구체적 방법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 추진 가능
- 지식재산 경영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
- 전략적 IP-R&D 등을 통해 핵심특허를 확보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
  - \*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직원 천명당 연평균 31건의 특허 출원(대기업 천명당 6건) (헤르만 지문, “히든 챔피언”, '96년)

#### □ (정부)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종합육성체계 구축

-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외에, 자발적·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#### □ (경제) 산업활성화 및 고용창출

- 지식재산 경영 확산으로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
  - \* 중소기업의 특허권 10% 증가는 매출액 0.46%, 고용인원 0.26% 증가로 연결(노동연구원, '12년)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확대되어 지식재산 조사, 분석, 평가, 거래, 금융, 투자,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업 성장
  - \* 미국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규모는 약 4조3,300억원, 일본의 시장규모는



약 1조3,676억원, 한국의 시장규모는 약 3,377억원(지식재산서비스협회, '12년)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| 일시         | 이해관계자          |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치결과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2014.4.3.  | 정부부처 관계자 등 16명 | 기업 지원을 위한 선의의 제도가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함 | (수용)<br>인증 불획득으로 낭비될 수 있는 시간·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인증 신청을 받을 것이며,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게는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조기에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 |
| 2014.4.29. | 중소기업 관계자 17명   | 인증기업에 대한 매력적인 지원시책 마련 필요            | (수용)<br>인증기업의 4~6년차 특허·디자인 연차등록료를 20% 감면할 계획임  |